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63135 판결 [전속계약금 정산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 원고(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그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매니지먼트사업, 영화·드라마 등의 기획 및 투자·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유명 배우들 및 그 소속사이다.
- 원고는 2017. 12. 27.경 피고들과 계약기간은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3년)로 하고, 전속계약금으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하며, 수익분배는 원고와 피고들이 20:8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 피고들은 2019. 11.경 원고의 일시적인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해야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갑 제2호증), 결국 원고는 피고들과 방송연기자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 12. 30.자로 쌍방이 날인하여 전속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0호증).
- 계약해지일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대한 전속계약금을 일할 계산하면 해지 후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은 116,850,000원이다.
-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인 점, 피고들이 가져가는 수익분배 비율이 80%로 거의 대부분인 점, 원고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어지게 했다고 볼 정도로 부실하게 연예업무 처리하지는 않았고,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 계약해지 사유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강력하게 해지를 요청하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요청에 동의해 준 것이다. 따라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2. 판단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지급된 동기 및 경위, 그 액수가 3억 원 정도로 책정된 이유에는 피고 D, E 부부의 대중적 인지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전속계약서(갑 제1호증) 제17조를 보면, 만일 피고 측의 전적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피고 측을 지칭함)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15%를 위약벌로 갑(원고 측을 지칭함)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속계약금 3억 원의 분배나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과 그 해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피고 D, E 부부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발적인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계약기간(3년) 동안의 부당한 해지금지 내지는 계약기간을 준수시키기 위한 대가 및 수익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패소

판사 맹현무